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자 동 차 관 리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현미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자동차 정비전문인력의 육성·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자동차관리법」을 개정(법률 제16634호, 2019. 11. 26. 공포, 2020. 5. 27. 시행)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자동차정비 전문인력 육성·관리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(안 제14조의5제1항 신설)

법에서 정한 정비전문인력의 수급·활용, 육성·교육훈련, 경력관리·경력인증 외에 “정비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
나.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절차 명시(안 제14조의5제2항 신설)

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·조합등 및 대학 등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다.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추가(안 제14조의5제3항 신설)

정비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을 각각 제14조의6 및 제14조의7로 하고,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5(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) ① 법 제69조의3제2항 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정비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
②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·조합등 및 대학 등이 법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2. 지원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

③ 법 제69조의3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·조합등 및 대학 등에 대하여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4조의5(자동차정비 전문인력</u> <u>의 육성 및 관리) ① 법 제69조</u> <u>의3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</u> <u>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정비전</u> <u>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</u> <u>사항을 말한다.</u> <u>②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·조</u> <u>합등 및 대학 등이 법 제69조의</u> <u>3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</u> <u>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</u> <u>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 또는</u> <u>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</u> <u>다.</u> <u>1. 정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</u> <u>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</u> <u>2. 지원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</u> <u>항</u> <u>③ 법 제69조의3제4항에 따라</u> <u>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</u> <u>사는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·</u> <u>조합등 및 대학 등에 대하여 정</u> <u>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</u> <u>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</u> <u>요청할 수 있다.</u>

<u>제14조의5</u> · <u>제14조의6</u> (생략)	<u>제14조의6</u> · <u>제14조의7</u> (현행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58